

##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법률안

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가 목 중 “차주의 신용등급”을 “신용등급”으로, “말한다)별”을 “말한다)이 4 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한”으로, “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”을 “해당 상품 전체 취급액 또는 취급건수의 100분의 70 이상인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분기 단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상품의 해당분기 대출(다만, 종료되지 않은 분기 중에 취급한 대출의 경우 해당 분기 종료까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)

나. 가중평균금리가 100분의 16.5 이하인 경우

제22조의2제2항제2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최고금리가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

라. 분기 시작 3영업일 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상품임을 공시한 경우

제4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예수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: 100분의 100이하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제22조2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4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수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에 대한 경과조치) 제44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예수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은 100분의 110이하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의2(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) ① (생 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로서, 전항에 따른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는 그 신용공여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구역내의 신용공여로 본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월단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상품의 해당월 대출</u></p> <p>가. <u>차주의 신용등급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신용조회업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등급을 말한다)별 대출취급액 또는 대출취급건수가 감독원</u></p>	<p>제22조의2(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분기 단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상품의 해당분기 대출(다만, 종료되지 않은 분기 중에 취급한 대출의 경우 해당 분기 종료까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)</u></p> <p>가. <u>신용등급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말한다)이 4등급 이하인 차주에 대한 --- 해당 상</u></p>

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
나. 가중평균금리가 상호저축은행의 조달비용, 신용위험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이 정하는 기준금리 이하인 경우. 이 경우 감독원은 다음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상호저축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③·④ (생략)

제44조(건전성비율) ①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에서 ‘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’이라 함은

품 전체 취급액 또는 취급건수의 100분의 70 이상인

--

나. 가중평균금리가 100분의 16.5 이하인 경우

다. 최고금리가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

라. 분기 시작 3영업일 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목 내지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상품임을 공시한 경우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44조(건전성비율) ①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 
말하며, 상호저축은행은 동 기  
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

<신 설>

② ~ ④ (생 략)
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예수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  
율 : 100분의 100이하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